무슨 깃발을 드는가? - 권력집중으로 인한 '소수엘리트의 오만'과 '다수국민의 굴욕' 퇴치! (정강 정책 서언)

序.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함성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생명과 존엄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는 첩경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분산'은 대한민국 모든 모순해결의 근본 처방이기 때문이다.
'부패척결'(정치)이나
'인간다운 삶'(경제적풍요/ 사회 복지/문화국가 확립)은
모두 권력집중의 폐해를 해소하면 거의 반은 이미 해결된 것이다.

1.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4대 독점권력(권력의 과두화)의 폐해로 인하여 발전의 기로에서 정체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양당 독점,
경제권력의 거대 대기업 독점,
사회적 인프라의 수도권 독점,
문화적으로 물질중심주의 등이 그것들이다.

경제문제는
'양극화 해결'이 급선무이다.
그리하여 '경제 민주화' 얘기는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의 수도권독점 문제는 지방 분권의 실질화,
즉 연방제로 해결 가능하다.
문화적으로 물질중심주의 문제는 정신문화오의 조화가 필요하다.

2.
하지만 대국적으로 볼 때,
국가는 정치의 메커니즘에 더욱 더 영향을 받는다.
해방 후 80년 가까운 세월이 온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념의 시기인 해방 직후엔
이승만의 반공 기치 하에 보수, 진보의 합작으로 공산세력을 이겨냈고,

이승만 독재에 대항하여서는 4.19혁명으로 보수, 진보의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 독재를 타도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5.16 쿠데타로 보수언론, 재벌, 영남 등의 세력이 수구보수의 군부 정치권력에 기대어 자라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항하여 민주세력의 저항이 국민적 지지 속에 18년 동안 계속되다가

수많은 역사의 발전에 반동이 있었듯이,
80년 민주화의 봄은 군부 반동 세력의 등장과 그 앞에서의 민주세력 분열로
피지도 못하고 다시 전두환 독재의 엄동설한 세월을 맞게 된다.

독재의 아이러니런가,
그 동안 보수독재가 국민의 행복 감소 대신 이루어낸 경제성장이 민주화의 봇물을 터뜨려
'87년 체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다.
그러나 또 다시 김영삼, 김대중의 적전 분열로 민주화 세력은 노태우에게 허망한 패배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비틀린 시대에 대한 민주투사 김영삼의 역발상에 의하여,
보수세력과 김영삼계 민주세력을 포함한 3당 합당으로 집권한 문민정부는 극단의 대립정치에서 벗어나는 듯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성이 떨어지는 보수세력과,
그렇다고 하여 도덕적 우월성에 낫지도 않은 진보민주 세력과의 무의미한 대립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그러던 중 김대중의 또 다른 역발상에 의하여,
김대중계 진보민주 세력이 김종필계 일부 보수세력과 연합하면서 근 30년의 보수정권 터널 끝에
김대중, 노무현을 포함한 두 번의 진보민주 세력 집권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오히려 대중의 마음에 무능한 진보라는 인식만 주고 실험으로 끝났다.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물질의 부족이 초래할 끔찍함에 미리 겁먹은 한국의 대중은 무능의 진보를 버리고,
선거 당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패의 이명박 후보에게 모든 부도덕을 탕감해주면서까지,
오직 경제적 부만을 기대하여 비도덕적 수구보수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한국의 대중이 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하여 선택한
박근혜 정부 질곡의 현실과 파탄은
결국 연인원 1600만의 국민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게 하여 박근혜 탄핵으로 마감된다.

3.
광화문의 함성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의미를 아전인수하여 이념 대립과 경제 혼란으로 몰아갔고,
그 안의 대한국민 대중들은 또 다시 정신의 피폐에 대한 회개보다는 물질의 결여에 대한 공포로 멘붕 상태에 돌입하였다.

'광화문의 함성'은 중앙 권력분산 (분권형 대통령제와 연방제)으로의 헌법개정과
협치를 위한 다당제등의 선거법 개정에 있는 바,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왜곡 해석하여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임기 4년의 대통령중임제 헌법 개정과
허울 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졸속 시행한 바,
촛불의 결실인 개헌은 물 건너가고 선거제도 개혁도 실패하여 기존의 양당제로 복귀시켰다

결국 문정부에 대한 반발과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였으나,
진영 대결의 현실은 오늘도 반복되어 대한민국은 지금도 표류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명색 뿐인 보수/진보 양당이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을 '양당 실세들의 국회파견관'으로 만들었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승한 야당의 지리멸렬한 저항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폐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광화문 함성의 여망이 아직도 절실한 지금은,
정치 사회적으로 '국민 의식의 성장'에 걸맞은 '혁명적 새 제도'(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연방제)와
경제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그리고 문화적으로 '새로운 정치문화'(관용과 민주적 인내)와
물질중심주의에서 정신문화로의 도약이 필요한 때이다.

무슨 깃발을 드는가?(정강)

경제
'불평등 사회'에서 '다함께 잘사는 사회'로!
- 기업과 노동의 화해 (고용보험 확대와 노동유연성)- 독일어젠다 2010개혁 참조
- 기본소득 도입 (1인당 40만원/월 (240조/연))

사회
'무한경쟁 삶'에서 '인간다운 삶'으로!
- 소수자, 약자 보호 (차별금지법 제정)
- 기후, 환경 중시

문화
'물질우선'에서 '멋있는 삶'으로!
- 골목 책방, 도서관 등 문화거점 활성화
- 시민 예술 교육 (프랑스 참조)

정치
'진영싸움'에서 '협치'로!
- /헌법개정(이원집정부제와 연방제)
/선거법개정(권역별 비례대표)
/시민정치교육(독일참조)

외교/안보(북한)
'전쟁'에서 '평화'로!
- 한미동맹강화 및 외교다변화
- 남북 상호 국가인정, 평화협정 체결

무슨 깃발을 드는가? (정책1)(권력분산 – 개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대전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꿈"을 꾸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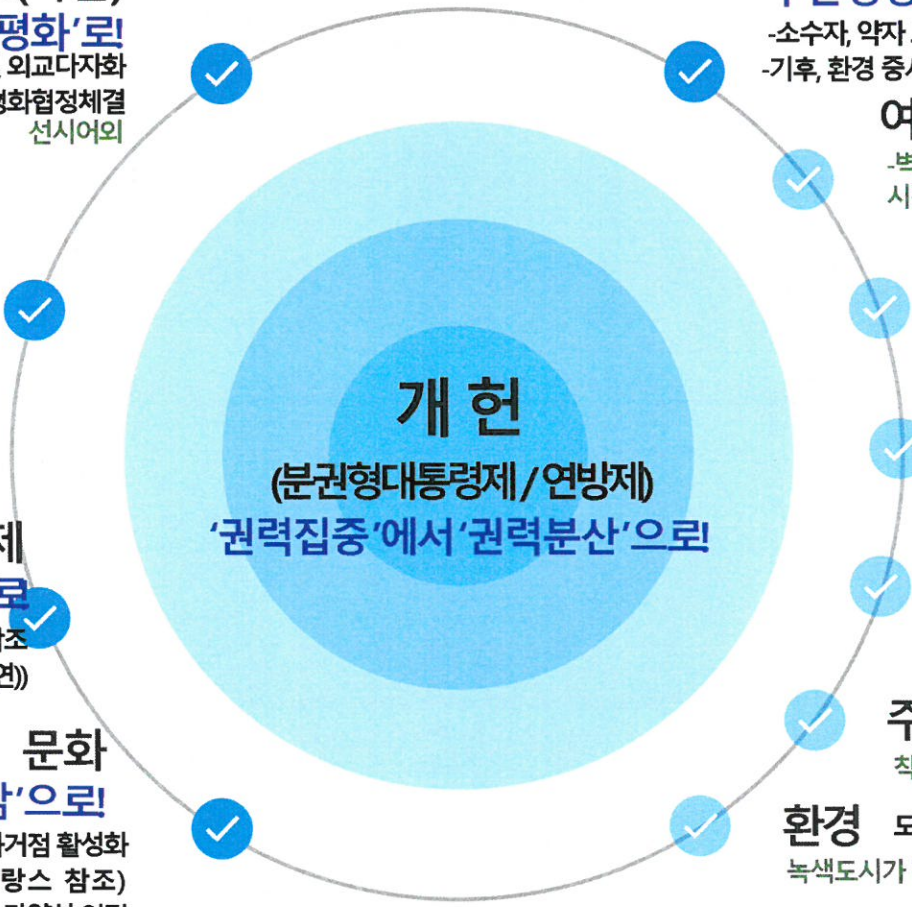

외교/안보(북한)
'전쟁'에서 '평화'로!
-한미동맹 강화 및 외교다자화
-남북상호 국가인정, 평화협정체결
선시어외

정치
진영싸움에서 협치로
-헌법개정(이원정부제, 연방제)
-선거법개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민교육 (뚝일참조)
코페르니쿠스적 발사의 전환 필요!
국회의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경제
'불평등 사회'에서 '다함께 잘사는 사회'로
과 노동의 화해(고용보험확대와 노동유연성-독일어젠다2010 참조
-기본소득 도입 (1인당 40만원/월 (240조/연))
한고조 유방의 약법 3장

문화
'물질우선'에서 '멋있는 삶'으로!
-골목책방, 도서관 등 문화거점 활성화
-시민 예술 교육 (프랑스 참조)
-다양성 인정
자기 영혼의 떨림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M. 아우렐리우스

사회(복지)
'무한경쟁 삶'에서 '인간다운 삶'으로!
-소수자, 약자 보호 –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 환경 중시

여성
가부장적 의식 철폐로 진정한 양성 평등
-벽이 문으로 바뀔거라는 희망을 안고, 별을 두드리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요

교육(청년)
대학입시폐지
-대학입시가 없는 나라를 상상해보자!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T. 아도르노)

아동 / 노인 / 장애인
지역포괄케어
-아우슈비츠 이후 우리는 서정시를 쓸수없다.-T아도르노
-학교설립을 위해 특수학교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빌어야하는 사회 서정시를 쓸수없다(이충범)

의료
의료인력증원/원격진료허용

주택
부동산 정책 3원칙으로 해결
착하고 좋은 주택을 포기하라.

환경
도시 재자연화
녹색도시가 인권정책이다.

무슨 깃발을 드는가?(정책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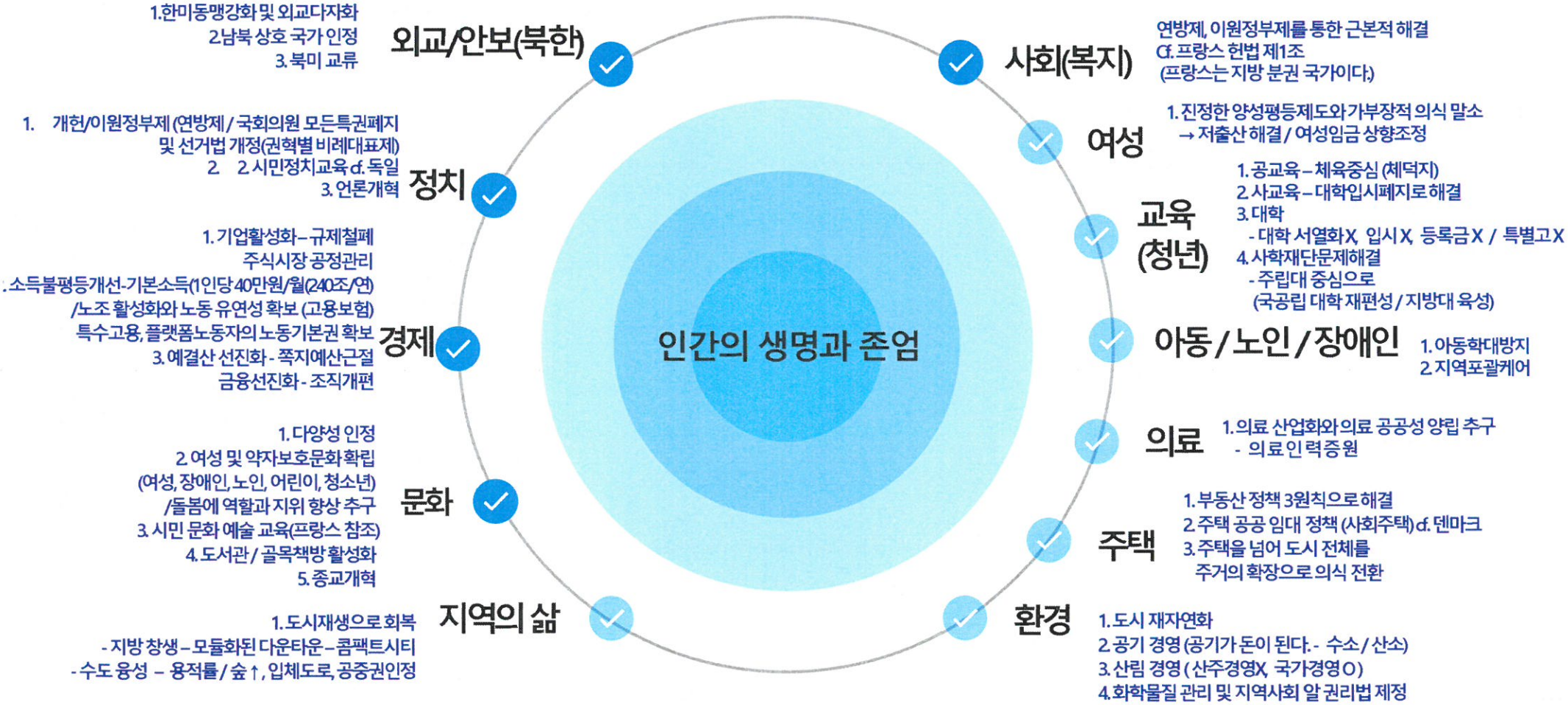

무슨 깃발을 드는가?(정책3)

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하자!

1. 인간의 생명과 존엄 위기 - 헌법에 명시 (cf. 독일헌법 제1조 :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
2. 정치 위기 : 제왕적 위기 대통령 / 중앙집중시스템
   - 헌법개정 / 선거법개정
     - 대통령제 → 2원집정부제
       - 대통령 – 외교/안보, CIA(국정원), FBI(국가수사본부)
       - 총리 - 내정일체
     - 지방자치 → 연방제 (30개 주정부)
       - 지방정부 - 광역 - 기초
       -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2원집정부제
     - 연방제
     - 국회의원 모든 특권 폐지 – 면책, 불체포, 소환
       국회의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 현재 국회의원은 양당 실세의 국회 파견관에 불과
     - 기본소득 - 인당 월 40만원 전국민에게 지급 아산만 방조제 건설 시 정주영의 배 발상 / 유방의 공약 3장
       40만원 X 5000만명 X 12개월 = 240조 (연간)
       - cf. 2010년 예산 300조, 2023년 예산 650조
       (2010년 → 2023년 예산 확대는 세수의 증가일 뿐이지, 진정한 지출이 아니므로
       350조의 용처는 기본소득 240조를 처리하고도 100조가 남는다.
     - 통일대비 (북한, 지방 정부로 편입)
     - 정치 (지방정부/지방의회/지방사법/지방언론)
     - 경제 (대기업/공기업 주정부 이전)
     - 사회(복지)
       - 출산/양육 (주정부중심)
       - 교육 (주립대중심)
       - 의료 (주립병원중심)
       - 주택 (주정부중심)
       - 환경 (주정부중심
     - 문화 (주정부중심)

     → 콤팩트 시티
   - 시민정치교육 (cf. 독일) (민주주의 - 관용, 제도적 자제)
   - 언론개혁 (방통위, 방심위)

사회문제는 정치인의 말로 아젠다가 되어야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현재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도
국회에 의안이 되지 않는 현실은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없다.
정치가 없는 것이다.

3. 경제 위기 : 불평등 /불공정/불신
   - 기업활성화 : 시장의 실패 부문 이외의 규제철폐
   - 주식시장 공정화 : 투자활성화
   - 예결산 선진화 : 쪽지예산근절
   - 금융선진화 : 관계기관 조직개편
   - 소득불평등개선 : 정규직 ·비정규직 4대보험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 노조 활성화와 노동 유연성 확보 (고용보험)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

4. 사회 위기 : 고장난 사회 공정 (능력주의)을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 (You can make it if you try – 오바마, 잘못된 생각)
한국은 오만과 굴욕으로 구조화된 사회 - 김우창
미국은 소수 엘리트의 오만과 다수 국민의 굴욕사회 – 마이클 샌들

4-1. 여성 위기 (성평등 위기) : 저출산 , 여성 저임금, 여성 양육부담
- 진정한 양성평등제도와 가부장적 의식 말소 → 저출산 해결 / 여성임금 상향조정

4-2. 교육 위기 (청소년위기) : 무한경쟁 / 능력주의 / 승자독식 자기 영혼의 떨림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 마르쿠스 아루렐리우스
- 중등교육 ┌ 사교육 – 대학입시폐지 대학입시가 없는 나라를 상상하자!
  └ 공교육 - 체육중심 (체덕지) cf. 핀란드 / 교사수준개혁 / 교육감선거개혁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 테오도르 아도르노
- 대학 ——— 입시 X , 대학 서열화 X, 등록금 X / 특별고 X 대학 누구나, 언제나
  사학재단문제해결 – 주립대 중심으로 국공립 대학 재편성 / 지방대 육성
- 비판교육 필요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우공이산 : 물질세계원리 / 마전성경 : 정신세계원리

4-3. 아동 / 노인 / 장애인 위기 : 아동학대 / 노인빈곤률 세계 1위 / 전장련 무시 아우슈비츠 이후 우리는 서정시를 쓸 수 없다. – T. 아도르노
- 아동학대방지 / 노인지역 포괄케어 / 장애인지역 포괄케어 (탈시설운동)

4-4. 의료 위기 : 의료인력부족
- 의료 산업화와 의료 공공성 양립 추구 - 원격진료허용 / 의료인력정원확대

4-5. 주택 위기
- 부동산 정책 3원칙으로 해결 (도시용적률 2배로 / 농지를 농업에서 해방 / 싸고 착한집 포기)
- 주택 공공 임대 정책 (사회주택) cf. 덴마크
- 주택을 넘어 도시 전체를 주거의 확장으로 의식 전환

4-6. 환경 생태 위기 기후가 생명이다.
- 도시 재자연화 녹색도시가 인권정책이다.
- 공기 경영 (공기가 돈이 된다. - 수소 / 산소)
- 산림 경영 (산주경영X, 국가경영 O)
-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 제정

5. 문화 위기
- 다양성 인정 : cf. 영국의 Train Spotting
- 여성 및 약자보호문화 확립 (여성, 장애인, 노인, 어린이, 청소년)
- 돌봄에 역할과 지위 향상 추구
- 시민 문화 예술 교육 cf. 프랑스
- 도서관 / 골목책방 활성화
- 종교개혁

5-1. 지역의 삶 위기
- 도시재생으로 회복
  - 수도 융성 – 도시 규제 완화 (용적률 / 숲↑, 입체도로, 공중권인정)
  - 지방 창생 – 모듈화된 다운타운 – 콤팩트시티

6. 전쟁 위기
- 남북 상호 국가 인정
- 북미 교류
- 한미동맹강화 및 외교다자화

당헌

[당헌-01] 제1장 총 칙
[당헌-02] 제2장 당 원
[당헌-03] 제3장 대의기구
[당헌-04] 제4장 집행기구
[당헌-05] 제5장 원내기구
[당헌-06] 제6장 지방조직
[당헌-07] 제7장 예산과 회계
[당헌-08] 제8장 공직선거
[당헌-09] 제9장 보 칙
[당헌-10] 부 칙 (2020. 2. 22)

[당헌-0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새로운정당 ‘니가 깃발이야’ 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보가 튼튼한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조직)
① 새로운정당 ‘니가 깃발이야’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으로 구성된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시ㆍ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도에 둔다.

[당헌-02] 제2장 당 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당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한자리까지 기재를 허용한다.
④ 입당원서는 원본 및 팩스제출 및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당을 인정 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당의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
3.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6.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2.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3.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4.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5.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6.당규에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 (당비)
① 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단, 당비의 배분비율과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당원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대납 으로 납부한 자는 당직 및 공직후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④ 구체적인 당비의 액수 및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 한 할 수 있다.

제7조 (선거와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원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당원관리)
① 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관리 운영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당헌-03]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0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대회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1.당 대표
2.최고위원, 고문
3.중앙운영위원회 위원
4.당 소속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5.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6.중앙당 각 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
7.시·도당 위원장 및 사무처장
8.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위원
9.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한 책임당원 중 중앙당 대표나 중앙운영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으로 그 수는 각각의 시·도당의 책임당원 중 5% 이내로 한다.

제11조 (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당헌의 제정 및 개정 당헌 추인
2.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추인
3.당 대표 선출
4.원내대표 선출
5.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6.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7.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중앙운영위원회가 그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3년마다 당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가 1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당 대표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에는 최고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13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당헌-04]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당 대표
2.최고위원
3.원내대표
4.고문
5.사무총장
6.정책위원회 의장
7.당 소속 국회의원
8.시·도당 위원장
9.당 대표가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약간 명
③ 중앙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가 되며, 당 대표 궐위 시 최고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5조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2.당헌 개정과 강령 및 기본정책변경, 이 경우 차기 전국대의원대회 추인
3.당규의 제정 및 개폐
4.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5.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6.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7.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9.주요정책 관련 안건의 당원투표 부의
10.원내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11.제14조 제②항 중앙운영위원 선임권
12.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합당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
13.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임한 원내대표 선출 및 원내대표 궐위시 선출 의결
14.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의결권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전국대의원대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1조 제1항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4호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의결은 중앙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고위원회가 그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소집 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절 당 대표

제17조 (당 대표)
① 당 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한다.(당 대표는 창당대회,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대로 선출할 수도 있다.)
②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중앙운영위원회 대표가 된다.
③ 당 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당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
2.최고위원 및 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대책회의 위원 추천
3.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4.당무 전반에 대한 집행·조정、감독
5.중앙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④ 당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절 최고위원회

제18조 (최고위원)
①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③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중앙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2.의원총회 소집 요구
3.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5.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6.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7.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8.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감독
9.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10.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11.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한 창당 승인 또는 사고당·사고지역당원협의회 판정
12.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④ 중앙운영위원회 불가피한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최고위원회는 제15조 제1항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의 세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 (고문)
① 당 대표는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당 대표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위원회)
①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사무총장
2.정책위원회 의장
3.당 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위원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4절 사무처

제21조 (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산하에 인사위원회 등과 필요한 국을 둘 수 있다.

제22조 (사무총장 등)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 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 을 관리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가 지명한 자가 그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 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 사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관련 법인 등의 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 사무직 당직자는 당 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명하되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 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제24조 (정책위원회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 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정책위원회 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의 실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입안
2.법률안의 연구 및 심의
3.당 정책에 대한 심의
4.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5.당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6.각급선거 공약개발
7.기타 당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6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정책 연구소)
① 새로운정당 ‘니가 깃발이야’의 이념과 정책, 전략에 대한 연구 및 당원의 정치지도자 교육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 형식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소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이사장은 당 대표가 지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의 이사회는 이사장의 추천과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7인 이하로 둔다.
⑤ 연구소의 운영 및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당헌-05]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8조 (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권한)
의원총회는 다음각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당의 일상적인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와 의결
② 입법관련 주요정책, 국회에 제출한 법안 및 논의할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③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심의
④ 정당법 제 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에 건의 의결
⑤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 결산 심의
⑥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0조 (국회의원 제명)
① 국회의원 제명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1조 (지위와 권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원내 업무를 총괄한다.

제32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가 불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원내대표의 궐위 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원내 대책회의)
① 당의 원내 활동에 대한 대책 협의, 조정을 위한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 대표, 원내대표 및 당 대표가 지정하는 10인 이내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로 한다.

제34조 (실무기구)
① 원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②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06] 제6장 지방조직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35조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시·도당 위원장
2.시·도당 운영위원회 위원

3.지역구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4.시ㆍ도당 사무처장

제36조 (시ㆍ도당 대의원대회 권한)
① 시ㆍ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시ㆍ도당 위원장 선출
2.기타 시ㆍ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 시ㆍ도당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당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①항의 권한은 운영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의2 (시ㆍ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 시ㆍ도당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시ㆍ도당 대표가 소집한다. 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기준 45일 전까지 정기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 시ㆍ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시ㆍ도당 위원장이 시ㆍ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ㆍ도당 위원장이 1월 이내에 소집한다.
2.중앙당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제2절 시ㆍ도당 위원장

제37조 (시ㆍ도당 위원장)
① 시ㆍ도당 위원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시ㆍ도당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시ㆍ도당 위원장은 시ㆍ도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며 시ㆍ도당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ㆍ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ㆍ도당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8조 (시ㆍ도당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시ㆍ도당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절 시ㆍ도당운영위원회

제39조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시ㆍ도당 운영위원회는 시ㆍ도당의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의장은 시ㆍ도당 대표자가 된다.
② 시ㆍ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시ㆍ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
2.시ㆍ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3.시ㆍ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4.시ㆍ도당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
③ 시ㆍ도당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0조 (시ㆍ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
시ㆍ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시ㆍ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2.기타 시ㆍ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절 시ㆍ도당의 사무처

제41조 (시ㆍ도당의 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되, 사무처장은 시ㆍ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사무처 사무국장 및 당직자 약간 명을 시ㆍ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당헌-07] 제7장 예산과 회계
제42조 (경비)
당의 경비는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및 부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43조 (당비)
당비의 금액,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 (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45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제46조 (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전년 10월 31일까지 각 집행부서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아 예산안을 작성하고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편성 및 확정된다.

제47조 (결산과 정당보조금 사용내역의 공개)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

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결산과 정당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48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확인, 검사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 (회계감사)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50조 (세부규정)
예산과 결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08] 제8장 공직선거
제51조 (선거대책기구)
① 각급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
①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각급공직선거후보자 공모
2.각급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3.각급공직선거후보자 결정,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후보자 추천)
① 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5조(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6조(자치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ㆍ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시ㆍ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제57조(비례대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ㆍ도당이 수행하되, 최종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당헌-09] 제9장 보 칙
제58조 (등록취소 또는 자진 해산 시 잔여재산처분)
당이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당시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별도 위임한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청산업무를 관장한다.

제59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 또는 자진해산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ㆍ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중앙당 대표가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 (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ㆍ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 (당규의 제정 등)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62조 (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63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의 변경)
당헌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은 당의 사정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의결정족수)
당헌에 별도의 의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안건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한다.

제65조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① 시·도당 창당 승인 및 취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당의 강령, 기본정책에 반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2.당의 당헌, 당규에 반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3.당에 해가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③ 시·도당 창당 승인 및 취소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 (의결 방법)
① 대의기관의 의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대의기관의 의결은「전자서명법」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10] 부 칙 (2020. 2. 22)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당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당초기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폐)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정치적 강령과 당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 및 골격과 건전한 상식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령과 당헌을 변경하고, 당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3조 (경과조치 및 특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